#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 회의록

- 1. 일 시: 2020. 9. 24.(목) 10:00~13:15
- 2.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의 장

간 사 \_\_\_\_\_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 회의록

2020. 9. 24. 운영지원단

## I. 개요

■ 일시: 2020. 9. 24.(목) 10:00~13:15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 허부열(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창열(간사), 고원혁, 서현웅(이상 서기)
- 분과위원회 및 운영지원단
  - 서경환(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김정환(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 최수환, 홍동기(이상 운영지원단장), 박노수, 안희길, 김도현, 양석용, 이인수, 유제민, 배진호, 강정현, 이재선(이상 운영지원단원)

## II. 의사개요

## 1. 의장 직무대행 지명

■ 의장,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윤준 위원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지명

## 2.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화상회의가 처음임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위원님들께 사전 검토 의견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청에 따라 의견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림. 분과위원회와 법원행정처 실무진은 관련 안건에 대한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가 되지 않는 의견도 검토 필요가 있으면 분과위원회 또



는 법원행정처 실무진에 검토 지시를 하도록 하겠음

- 오늘 안건 중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의 경우 비공개로 하되, 관련 자료는 화면으로 제시되고 분과위원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릴 예정임. 나머지 안건의 경우 일단 위원님들로부터 취합된 의견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무진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구두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 3. 「법원관사 등 배정기준」 중 비연고 개념(소관: 재정·시설 분과위 원회)

#### 가. 토론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기획총괄심의관의 설명이 있었음
  - 의장
    - 첫 번째 안건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 법원관사 배정기준 중 '비연고'의 개념에 관한 것임. 제시된 결정사항 예시에 대해 위원님들 대부분이 동의해 주셨지만 윤준 위원님께서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주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간사인 기획총괄심의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 기획총괄심의관
    - 윤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보임
    - 보내드린 자료 각주 1 내지 5번을 보면 타 기관 사례가 나와 있는데, 국립수목 원의 경우 명시적으로 본인의 거주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나 고용노동부 등도 명시적 기재는 없으나 본인의 거주지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 는 것으로 보임
    -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지나 거주지가 떨어져 있는 여러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예컨대 본인은 자녀와 함께 생활근거지에 살고 배우자가 직장 등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다른 권역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권역으로 발령이 난 사례의 경우에는 관사 제공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배



우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를 연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경우 관사 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 외에 배우자의 거주지(주소지)까지 추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 부분에 대해 재정·시설 분과위원장과 상의를 해본 바, 분과위원장은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만 실제 관사 배정은 각급 법원의 내규에 의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배정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 각급 법원의 구체적인 관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윤준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법관 부부의 경우 대부분 같은 날 발령이 나지만 법관·검사 부부의 경우 발령일
      자가 다르게 되는데, 관사 위치나 교육환경 면에서 후일 발령이 난 부부 일방의
      관사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보통 선택을 하도록 함
    - 하지만 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하면 이런 경우 후일 발령이 난 사람은 먼저 발령이 난 배우자의 관사에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를 두는 의미에서라도 배우자에 대한 부분 추가 없이 결정 예시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윤준 위워
    - 본인의 생각을 고집할 생각은 없음

#### 나. 결정사항

■ 「법원관사 등 배정기준」에 예시된 '연고법관에 해당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비연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사발령 시 근무지[법원 또는 지원 소재 시·군. 다만, 서울 및 경인지역 소재 법원(여주, 평택지원 제외)의 경우는 서울 및 경인지역]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가 없고, 출·퇴근이 곤란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소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 가. 토론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형사지원심의관의 설명,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의장
  -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관련, 위원님들께서 예시문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해 주셨음.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본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관련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다자조약 및 양자조약이 혼재한 상황에서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절차에 대한 법원의 자체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문제인식에 공감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게 되었음
  - 원칙적으로 법원은 집행기관이 아니지만 실제 체포 또는 구속 시 법원이 그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동 의를 해 주셨음. 향후 이와 관련된 여러 구체적 양식 및 전산시스템도 발맞춰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최한돈 위원님께서 구속심문절차에서 판사로 하여금 구두로 확인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것보다 심문준비단계 등에서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문자로 인쇄된 확인 및 고지사항을 교부하여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간사인 양석용 형사지원심의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 ○ 형사지원심의관

- 최한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함
- 다만 법원사무관등의 서면 교부방식에 비해 재판장의 직접 확인 고지방식이 보다 분명한 권리보호방식이 될 수 있는 점, 심문종결 전 향후 구속영장 발부집행을 전제로 한 사전의 권리고지는 서면 교부방식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었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추후 각 방안에 따른 효과 및 실무적 문제 등을 고려하고, 필요시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 최한돈 위원



-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판사가 기억하고 있을 때는 판사가 직접 고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심문절차에 판사가 굉장히 집중하게 되면 더러 놓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단계에서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확인을 받게 하면 심문 절차에서 고지 절차를 놓치게 되는 절차적 누락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결정사항 예시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관련 절차를 고지하고 확인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 외국인이 자신의 모국어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된 것인지 의문이 듦
  - 의장
    -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법원이 양식을 만들 때는 외국어로 번역을 함. 말씀 하신 부분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 것처럼 당사자의 모국어로 된 확인 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음. 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양식을 만들고 서명을 받되 나중에 법관이 절차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음

#### 나. 결정사항

- 적법절차 원리와 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법원은 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체포· 구속되는 경우, 법원이 직접 영사통보의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비엔나협약 등에 따른 '영사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규,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하여 체포·구속에 관한 영사통보 실 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5.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소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 가. 토론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민사지원1심의관의 설명,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 의장

- 판결서 공개 확대 취지의 의결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 오승이 위원님께서 신 중한 입장이시고, 이찬희 위원님께서는 형사판결서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 다는 입장이심. 하지만 다수 위원님들께서 단계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지 파일은 물론 TEXT PDF 파일까지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음
- 관련하여 윤준 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므로, 결정사항에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민사지원제1심의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 ○ 민사지원제1심의관

 미확정 판결서 공개와 관련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임.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윤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결정사항이 포함되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 ○ 윤준 위워

• 해당 부분을 결정사항에 포함시켜 판결서 공개에 대한 법원의 의지 및 노력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21대 국회에서도 면책규정 유무, 비실명화 여부에 대한 차이는 있긴 하나 판결서 공개와 관련한 법률안이 4개 제출된 상황임. 미확정 판결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자문회의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제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민사지원제1심의관의 설명, 의장의 보충 설명이 있었음



## ○ 의장

• 박균성 위원님께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 ○ 민사지원제1심의관

-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만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나 전자우편에 의한 판결서 사본 제공, 특별열람실 방문 열람에 의한 판결서 공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따라서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논의에서도 가사사건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논의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림

- 민사지원제1심의관이 설명한 것처럼 가사소송법의 해석에 따르면 가사 판결문
  은 확정·미확정을 불문하고 공개 여부가 재판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판결서 공
  개 논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임. 괜찮으신지?
- 박균성 위원은 민사지원제1심의관 및 의장의 설명에 동의하였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충실히 검토해 주셔서 감사함
  - 내용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안건에 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가 다른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방식에 대한 하나의 모범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안건을 회부했던 것임
  - 본 주제와 관련하여 예전부터 자발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들이 있음. 큰 틀에서 앞선 연구 과정의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위에서 결정한 후 하달하는 방식으로 연구·검토가진행된 것 같아 아쉬움
  - 기존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됐



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바람임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만 건의 드리고자 함
  - 판결서 공개 결정에 따라 기존 판결서에 대한 공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 대법원 판례와 연계되는 하급심 판결은 우선적으로 전산화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음. 대법원 판례만 가지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도 많이 있기 때문임
  - 또 하나는 판결서의 오류 문제인데, 전산에 공개된 판결서 중 미세한 오류가 수 정되지 않은 경우가 보임. 작성자가 일일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들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한 사람이 수정 요청을 하고, 이를 취합해서 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진행한 후 오류를 수정하는 공개된 판결서 오류 수정 절차도 마련하는 것을 건의드림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판결서 공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공개 방법, 특히 미확정 판결서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에 따라 여러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 음
- 본인은 취임 이후 법관의 책임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라도 판결서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고, 그 동안 분과위원회는 물론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연구를 해왔다고 생각함
- 다만 인력, 기술, 예산 등의 문제로 미확정 판결서를 당장 내일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임. 현재 1년 간 약 50만 건 정도의 확정판결에 대한 비실명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확정 판결서의 비실명화 작업에 대한 부담이 많고, 또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 예산에도 아직 반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2022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음
- 기술 개발을 통해 작은 크기의 파일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공개가 가능하다 는 기술진의 보고가 있긴 하나 이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여태 까지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던 것을 소급하여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임

- 김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와 연계되는 판결서의 우선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 인력, 예산 부분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판결서의 오류문제와 비실명화로 인한 가독성의 저하 부분 관련, 경과실의 경우에는 면책규정 유무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막상 일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임. 이런 점들을 포괄하여 판결서의 가독성을 높이고 판결서의 오류를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구해보도록 하겠음
- 오승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협업을 거치는 절차를 분명히 진행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찬희 위원
    - 일반적으로 국민이나 재판관계자 입장에서 행정, 특허사건보다는 민사,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민사, 행정, 특허, 형사, 가사 등 사건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여겨지지 않음. 여러 여건상 민사, 행정, 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한 후 그 경과를 보고 형사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는 전체적인 취지에는 본인 역시 동의하나, 일부 공개가 되어도 큰 위험이 없다면 민사, 행정, 특허 미확정 공개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 보다는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최대한 빨리 공개하는 것이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따른 효과를 더욱 높이리라 생각함
    -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는 본인의 사건에 대한 인신구속 여부 및 형기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은 물론 전관예우의 예방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미공개 상태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림

#### ○ 의장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본인 역시 크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음. 민사, 행



정, 특허 판결서 공개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은 아님

- 입법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면책규정을 넣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말씀드린 것 처럼 21대 국회에서도 벌써 수 개의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한 번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결정문안 예시문안에 동의함
    - 지금 논의하는 사항은 아니긴 하나, 6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결문 내용 또는 표현 방식에 따라 공개되었을 때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주 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림

#### ○ 의장

- 그와 관련해서는 오승이 위원님께서 분과위원회 회부 제의를 했고, 젠더법연구 회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음
-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더 살펴보도록 하겠음

#### 나. 결정사항

-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 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 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 판결서 공개제한신청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대법원규칙과 예규 등을 개정 할 필요가 있음



-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및 TEXT PDF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의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
-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

## 6.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 가.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결정사항 예시에 있는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는 의 견에 다들 동의해 주셨음
  - 노동법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역할, 참심제 도입 여부, 2심 설치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긴 하나 특별히 반대의견을 내신 분은 없는 것 같음

## 나. 결정사항

■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고,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

#### 7.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가.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제1기 위원의 임기가 10월 말에 종료 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안건을 정해서 회부할 필요가 있음
  - 결정사항 예시에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으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을,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으로 '전문법관 확대 방안', '민사재판 제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1기 활동 내역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안건을 연구·검토하는 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을 예정하여 정했음



-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는데, 오승이 위원님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도 연구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음. 이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는 물론 민사를 포함하여 지속적·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춰 젠더법연구회는 물론 다른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한 번 맡겨 주시면 좋겠음
- 윤준 위원님께서 각 안건의 중대성, 파장, 연구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안건 별로 전문성 있는 법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를 두고, 소위 구성을 긍정 하는 경우 소위 구성 여부를 분과위원회의 자율에 맡길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에 소위 구성을 권고할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셨음. 본인은 자문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시에 진행할지 여부를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는 소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안배해서 지명하는 정도로 정했으면 하는데 윤준 위원님 동의하시는지?
- 윤준 위원은 의장의 제안에 동의하였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회부사항으로 예시된 안건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기대가 되는 사항이지만 5개 과제를 모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굉장히 버거울 것으로 보임
    - 위 5개 안건을 연구·검토 과제로 회부한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1년 안에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를 넘기더라도 충실한 안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고대함

- 본인도 같은 의견임. 오랜 기간 논의했으면서도 시행되지 못한 구속영장단계 조 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는 물론, 전문법관 확대,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은 국 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간적 한계를 두지 않고 충실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함
- 소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새로 구성되는 제2기 분과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고, 보



고기한도 종전 예와 달리 따로 정하지 않되 다만 12월 정기회의 때 경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음

#### 나. 결정사항

- 제2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②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 색 실무 개선방안'을 정하여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 제2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전문법관 확대 방안', ② '민사재판 제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을 정하여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 회부 하기로 함
- 8. 특별승진제도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소관: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 선 분과위원회)

## 가. 토론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인사운영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예시문안에 동의하셨으나 김진석 위원님께서 '특별승진 신청시까지의 근무기간 중 50% 이상'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 견을 주셨고, 윤준 위원님께서 평가요소 및 평가척도의 구체화, 객관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주셨음. 이에 대한 인사운영심의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 ○ 인사운영심의관

- 특별승진 신청 시까지 50% 이상의 현장부서 근무경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 전원이 사실상 동의를 하였음. 하지만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의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정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면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결정사항을 정하실 때 필요하다면 결정사항 예시를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함
- 윤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관련, 현재 분과위원회에서 평정자와 확인자의



역할 변화, 평정과정에서 업무 유관자의 의견 반영, 근무실적 등의 평가요소 및 평가척도의 개선,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지원 단위의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설치, 평정등급 및 평정점 부여방식 개선, 그리고 평정공개 및 평정이의제도의 도입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21년 상반기 중 실질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연구·검 토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윤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사 법행정자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인사운영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 의장

• 이찬희 위원님께서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직무역량 평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주셨음.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기능과 역할, 직무역량 평가 능력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림

#### ○ 인사운영심의관

-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실제로도 최근 2019년 폐지된 법원주사보 승진능력검정시험을 대 체하는 7급 승진 후보자 과정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특별승진 관련 직무역량 평가는 5급 사무관에게 요구되는 역량, 즉 공탁 또는 가족관계등록, 회생 등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후 그 역량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만 직무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는 Pass/Fail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시행방식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교육원과도 어느 정도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임
- 이미 현재 법원공무원교육원이 7급 승진시험을 대체하는 7급 승진 후보자 과정에서 직무역량평가를 최근부터 실시하는 등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경험을 확대·발전시킨다면 5급 직무역량평가에도 충분히 활용 가



능할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찬희 위원
    - 현재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해 의견을 개진한 것은 아님. 본인 역시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여러 번 방문해봤는데 시설도 좋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음
    - 다만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직무역량평가에 대한 법원공무원의 만족도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직무역량평가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음

#### ○ 의장

- 직무역량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겠지만 5급 사무관 선발을 위한 직무역량평가는 7급 주사보 선발과는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정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허부열 위원의 답변,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자료 마지막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6급 이하 직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 ○ 허부열 위원

- 분과위원회에서 특별승진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1, 2차 선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최종 특별승진후보자 선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의 비 중이 컸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음. 하지만 이 부분은 노동조합 의 승진 인사 관여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특별승진절차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 의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음
- 다만 분과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이 부분을 비중 있게 주장했기 때문에 사법 행정자문회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임

#### ○ 의장

• 노동조합의 인사 관여 문제는 법원에만 있는 것은 아님. 또한 모든 법원공무원



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을 구성할 시 적절히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음

#### 나. 결정사항

- 특별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승진최저요소연수인 3년 6개월이 도과한 자를 대 상으로 하되, 현장부서 근무경력 요건으로 특별승진 신청 시까지 6~7급 통산하여 50% 이상자만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운영함
- 특별승진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험승진 응시제한자도 특별승진 심사대상에 포함하며, 심사응시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승진시험응시와 특별승진신청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함
- 특별승진 심사절차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단위의 각 선발을 거치고 법원행정처에서 최종 선발하는 3단계 절차로 운영하며, 법원공무원교육원과 연계된 직무역량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함
- 세부적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나 방법, 규정 개정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함

## 9. 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위원 임명·위촉 계획

#### 가. 논의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기획총괄심의관의 설명이 있었음
  - 의장
    - 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위원 임명·위촉 계획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법관 위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연임을 하는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셨는데, 오승이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일부 외부 위원들의 사임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 ○ 기획총괄심의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위원의 경우 기재부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더 이상 위원 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하고 후임자를 위촉하게 되었고, 다른 분과위원회 두 분의 경우는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승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이유라는 점을 말씀드림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이찬희 위원님께서 내부위원 중 1, 2명은 유임하는 방안을 건의하셨음. 본인 역시 처음에는 공감을 했고 특히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아 유임 요청을 했는데 위원들께서 모두 고사를 하셨음. 게다가 내부위원 간 유임 여부에 차별을 두는 것도 부적절하고, 가능한 한 많은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부득이 신규 임명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림
- 최한돈 위원님께서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1기에서 빠진 고법판사 1인을 임명하고, 고등부장 및 법원장(추천제 법원장 포함) 중 1인을 임명하는 것이 심급 및 경력 고려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주셨음. 본인 역시 1기 위원 중 고법판사가 없어 고법판사를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음
- 고법판사를 임명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사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음. 우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남성 2명, 여성 2명을 추천했는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 한 고등부장, 추천제 지방법원장, 고법판사 2명은 모두 남성이었음. 계속 말씀드 렸지만 본인은 2인 선발 시 남녀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등 인원 선발 시 일정량 의 여성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번에도 본인은 여성을 지명하려고 했는데 추천한 인원 중 여성 고법판사가 없었던 점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변호사시험 출신 법관을 추천하지 않았음. 물론 현재 변호사시험 출신 법관의 수는 많지 않지만, 장래를 위해 변호 사시험 출신 법관의 의견 역시 반드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법판사보다는 변호사시험 출신 법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변호사시험 출신 역성 법관을 지명했음
- 최한돈 위원님의 말씀처럼 고등부장과 법원장 중 1인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의 주된 이슈 중 하나가 법원장 추천제에 관한 것임.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이 되신 현 동부지방법원장님이 아주 적임이다 보니 지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고법판사를 지명하게 되면 고등부장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 선



택지를 놓고 고민을 한 결과 고법판사의 의견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고등부 장이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변호사시험 출신을 충족시키는 위원 으로 결정하였음

-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이 있음. 당초 법 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아는 사람 수는 적은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5명으로 구성했는데, 선발성 보직 인사 4건 및 장기근무제도 제도연구까지 하다 보니 관련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원포인트 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인원수를 조금 늘렸으면 함. 하반기 새로 구성되는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서는 선발성 보직 외에 추가 부과될 과제 모두를 5명 위원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이어서 7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음
- 말씀드린 것처럼 고법판사, 여성 변호사시험 출신 법관 등 다양하게 구성하면 좋지만 5명이라는 인원 제한 때문에 부득이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음. 법관인사 분과위원회는 구성이 끝났고 나머지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때도 1기와 마찬가지로 주제와 걸맞은 인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찬희 위원
    - 대한변협에서 외부 위원 중 변호사시험 출신 법관을 1명씩 추천했는데, 이는 종전 경력이 많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시각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교육체계에서 공부를 하고 재판을 통해 법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의 시각이 법원 운영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취지임. 비록 그 중 1명의 선거 출마로 인해교체가 됐긴 했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변호사시험 출신의 의견이 법원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함. 그 부분에 대해 의장님께 감사드림

#### ○ 의장

남녀비율도 중요하지만 변호사시험 출신 법관의 재판제도 또는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 법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10. 법관평가제도 TF 활동경과 보고

## 가.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법관과 변호사 위원을 동수로 하고 TF를 운영한 결과 공통된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주제에 대해 팽팽한 의견을 도출했음
  - 자문회의 제5차 회의에서 TF를 통해 논의의 바탕이 만들어지면 외부위원까지 포 함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새 로 구성될 분과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음
  - 다만 윤준 위원님께서 새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법관과 변호사의 수를 동수로 하고, 제3자적 시각을 지닌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되 외부위원의 수와 선정에 대하여 법관과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음. 예를들어 법관 4인, 변호사 4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외부위원 2인을 법관 위원과 변호사 위원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자는 취지인데, 아주 참신하고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방안인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윤준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함.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하며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위원을 추가로 영입하는 경우 다른 의견이 개진되어 또 다시 분열될 소지가 있음. 하지만 법관 위원과 변호사 위원이 동의하는 외부위원이 참여한다면 어떤 면에서 casting vote도 가질 수 있고 제 3자의 참신한 시각도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의장은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바, 모든 위원이 윤준 위원이 제안한 의견에 동의하였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분과위원회에 법관과 변호사 외에 학자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도 참여시키는 것 이 어떨까 싶음
  - 또한 법관평가 결과는 신중하게 법관 개인의 자기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한 후 추후 평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이찬희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 의장

•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변호사 4명, 법관 4명에 더해서 외부위원 2명을 추가하는 것임. 외부위원 2명은 조금 전에 의견을 모은 것처럼 법관 위원과 변호사 위원이 동의한 사람으로 위촉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TF 구성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이찬희 위원

• 변호사 위원이 각자 생업을 하며 TF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업무량이 상당한 것 같음. 본인 역시 이 분들이 분과위원회 위원 활동까지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위원께서는 고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런 경우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이 분야에 관심 및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을 새로 추천하도록 하겠음

- 그렇다면 현재 TF 구성원들이 모두 분과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되 가능하면 한 사람은 여성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새로 추천하게 되는 경우 그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음
- 이찬희 위원
  - 알겠음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이 훼손될 염 려가 없는 방법으로 법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임. 지금과 같이 설문조사 방식으로 법관평가를 하는 것은 법관평가의 중요성에 비추어 조금 곤란하지 않 을까 싶음
  - 법관평가를 하게 되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성을 신중히 하고 평가 기준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본인이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면 위 와 같은 취지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의 지금 주신 의견은 물론 그 외 다른 의견 모두 새로 출범하는 분과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음. 법관평가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기 때문에 타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보고도 계속 받고 수시로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찬희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윤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다른 위원들은 대부분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새로 참여하게 되는 외부위원 2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의문이 듦. 법관과 변호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본인 같은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고, 동의를 얻어 들어오는 사람은 법관과 변호사 집단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로 위촉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원천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음
    - 두 번째로, 변호사팀이 작성한 자료집을 보면 법관평가제도의 시행 효과로 사법 서비스 품질개선, 국민 대중에 대한 교육적 효과, 사법권 독립의 제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자료의 제공을 들고 있음.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여 기서 말하는 '국민 대중'이 누구를 말하는지, 법관과 변호사 이외에 여러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또는 연구자는 평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근원적인 의문이 들었음
    - 또한 최한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법관평가 결과가 어느 목적까지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듦. 또한 자료집에 제시된 법관평가표의 질문사항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평가항목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피해자 비난, 의심, 반복질문 등 인권침해적인 심문들에 대해 법관이 적절히 제지하는 소송수행을 하는지'가 빠져 있어 조금 더 많이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림
  - 이찬희 위원
    - 법관평가제도의 시행 효과는 논문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을 적시한 것임



- 국민 대부분은 평생 한 번 또는 많아야 두 번 재판을 경험하는 반면, 변호사는 계속해서 재판을 수행하고 재판부 별 비교가 가능하며, 법관 1인에 대한 여러 변호사의 평가가 축적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는 객관성과 합리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음. 또한 변호사는 국민인 의뢰인의 뜻을 반영하여 평가할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통해 자신이 소송당사자로서 재판 과정에서 법관에게 무엇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국민 대중에 대한 교육적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음
- 2008년 법관평가가 최초로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법관에 의한 법정 내 막말을 막아보자는 것이고, 실제로 관련 항목이 지금까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지방 별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하나 모든 법관평가표에는 법관의 법정 언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고, 법관평가 TF와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더욱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처음 출발하는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음. 일단 법관평가제도를 실시하고, 당장 인사에 반영하기보다는 추후 인사에 대한 반영을 전제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사실 검찰은 법관평가 TF와 같은 소통 절차 없 이 이미 내부 인사에 검사평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법 관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방금 이미경 위원님께서 발언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함
-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 증거신청 등에 대해 법관이 적절하게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변호사에 의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면 법관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증거 신청 등을 제어하기 어렵고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피해자의 법관에 대한 평가 없이 변호사들에 의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면 법관의 소송 진행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일방적인설문조사 방식의 법관 평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염려를 항상하고 있음. 그런 점을 적절히 예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법관평가



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이 답변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분과위원회 외부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변호사 측과 법관 측 의견 차이가 커서 혹 동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음. 이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조건 동의하는 경우에 만 선정하는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보다는 '가능한 한 동의를 얻어서 구성한다'정도로 규정하면 어떨까 싶음

#### ○ 의장

- 당연히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우리 자문회의의 의견을 구해 다시 선정해야 하지 않을 까 함
- 본 안건은 보고 안건이기 때문에 따로 의결사항을 만들지는 않았음. 다만, 오늘 동의한 구성 방식은 물론 위원님들의 위원은 위원장을 통해서 분과위원회에 전 달할 것임
- 참고로 법관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분과위원회는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로 이미 명칭을 정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11.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중간 보고(소관: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 가. 논의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설명이 있었음
  - 의장
    -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음.
      역시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서면화된 의견은 특별위원회에 모두 전달하도록 하겠음. 현재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대국민 인식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음
    - 윤준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게 된 경과, 법



무부의 '정부안'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음

####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11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법무부 추천 검사,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입법 부 공무원, 학회 및 시민단체 인사가 고루 분포되어 있음. 각자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차로 의견을 전부 개진하여 취합한 결과 세 가지 방안으로 유형화가 돼서 그 이후로는 이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고 보고를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림
- 법무부의 '정부안'이 있는지 여부 관련, 아직 위원회에서 법무부 등에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조회한 적은 없지만 법무부에서 상고제도개선에 관한 별도의 정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아직까지는 법무부 추천 위원이 법무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연구·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특정 방안이 도출되면 그 안을 정부안으로서 법률안으로 제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그 단계에서 법무부 추천 위원이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법원에서는 상고제도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정치 현안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기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동력을 가지고 상고제도를 개선할 의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급한 문제를 방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연구 경과 보고 및 외부 홍보를 진행함 은 물론 8월 15일에는 8.15 특집으로 법률방송에 위원님들이 출연하여 좌담회까 지 진행하였음. 좌담회를 클립으로 만들어 유튜브에도 게시하였는데, 아직도 조 회 수가 1,000건을 넘지 않아 걱정이 듦
- 전문가 집단, 일반 국민, 그리고 소송에 관여 경험자 등에 대한 대국민 조사도 자



세하게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공청회 등 기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한 후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방안을 정하면 자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그에 따라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 국민들의 관심이 아직 크지 않아 21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상고제도와 관련된 법률안은 발의되지 않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를 자 문회의에 보고하고, 실행도 하는 등 최선을 다할 예정임. 현재 법무부에만 관심 이 많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다는 점이 제일 걱정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이외로 본인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서 상고제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기자들의 문의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법관평가제도와 상고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많다는 점이 체감이 됨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상고제도에 관한 논의과정을 조금 더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림

- 특별위원회에서는 계속 논의내용이 달라지는데 공개되는 경우 그 시점에 따라 어느 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음. 자료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개별 위원님들께서 작 성한 참고자료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자문회의에 보고된 보고서는 공개해도 좋 다는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림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찬희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본인과도 소통하고 있긴 하나, 대한변호사 협회 내부적으로도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의견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위원의 의견을 공개하는 경우특정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처럼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 따라서 논의 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공개 외에 개별 위원의



의견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음

#### ○ 의장

- 특별위원회 각 위원들이 제출한 별첨자료들은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 도개선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 과정을 기재한 중간보고서만 공개할 예정임
- 더욱이 개별 위원의 상고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은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의 견 해는 물론 추천 기관의 의견도 아니라는 점을 미리 적시할 예정임
- 내용 중 민감한 사항이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내용을 비공개 혹은 일부공개로 하되,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논의의 흐름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겠음

## 12.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

#### 가. 논의

■ 다음과 같은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심의관의 설명, 의장의 보충 설명이 있었음

- 본인이 취임한 이후 본 주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 상담신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했음. 이미경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는 있지만 실제 유의미하게 신고 또는 상담건수가 많지 않아 실상이 어떤지 걱정이 되긴 하나,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임
- 오승이 위원님께서 네 가지 정도 의견을 주셨음. 양성평등 가이드북 등이 법관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데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는 없는지 여부, 신임법 관 임명동의 대상자 중 2/3가 남성인 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도 자녀는 물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에 대해서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공무원규칙 개정 제안, 업무용 가상PC 발급 대상자(육아휴직 가능자)의 확대 계획 여부문의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법정책심의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 ○ 사법정책심의관

- 오승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가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보고 드린 교육자료 대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 중심으로 제작되었고, 법원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작된 자료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종 교육이나 안내자료 중 상당 부분은 법원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양성평등 가이드북의 상당 부분, 양성평등지원관 매뉴얼의 전 부분이 법관은 물론 법원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법원구성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원공무원의 상황을 더 구체적·개별
  적으로 반영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향후 자료를 개정하거나
  법원공무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작하는 방안도 충실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음
- 다음으로 올해 신입법관 중 1/3 미만이 여성인 이유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음. 법관 임용절차는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서류심사의 경우 인적사항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완전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실무능력 면접이나 법조경력 면접, 인성, 역량평가면접 등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선발이 이루어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임용 결과가 특정 직군이나 성별 등에 치우칠 수 있으나 이는 임용과정에서 여러 인적사항을 가린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나 이유를 따지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음. 당연한 이야기지만 임용 과정에서 특별히직군이나 성별의 비율을 정하거나 비율을 맞춰 임용하고 있지 않다는 소관부서의 답변을 확인했음
- 이번 9월초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법원의 돌봄휴가 확대 건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개정 법률이 곧바로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나 현재 위법률의 개정 취지와 유사하게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원님 말씀 이전부터 법원행정처에서 그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법원에서도 그에 준해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을 검토 예정이었고,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음



■ 마지막으로 업무용 가상PC 발급 대상자 확대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림.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법관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발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음. 다만, 가상PC 보유 대수에 한계가 있고, 특히 낮 시간대의 경우 보안 유지나 시스템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위 제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 대상이나 시간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번 가상PC 발급 대상자는 내년 정기인사까지 사용하게 되고, 내년 정기인사 시 다시 신청을 받아 배정을할 예정인데 이번 배정 대상자의 이용 현황, 이용 법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확대여부와 그 범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상PC를 보다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도록 하겠음

-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법원공무원과 법관을 구별하여 제도를 도입하거나 소개하지는 않음. 다만 경우에 따라 서로 내용이 다를 필요가 있는 경우 따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법관들에게는 자료가 다 제공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인은 다 보고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릴수 있음
- 가족돌봄 휴가 관련 법률은 2020년 9월 8일 시행되었음. 법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하위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본 법은 소급하여 올해 1월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원 역시 보조를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음. 법원게시판의 '소통의 창'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법원 내부 규정 개정 등의 건의가 들어오고, 그에 따라 응답을 하기도 하는데, 육아 휴직의 경력 산입과 관련해서도 '소통의 창'을 통한 건의가 있어서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 방법을 통해 법 개정에 맞춘 법원 내부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업무용 가상PC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대수 보급도 있지만 자택 PC의 보안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큰 맹점은 보안 문제라고 할수 있음. 업무용 가상PC 보급을 확대하기는 하겠지만, 보안 이슈로 인해 어느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이미경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 의장

#### ○ 이미경 위원

- 자료를 살펴본바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굉장히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는 다른 기관보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음. 본인이 9월 18일 성범죄재판 함께 돌아보기 포럼에 참석했는데, 판사님들께서 인권존중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거의 11시까지 열정적으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음
- 하지만 회의 자료집 64쪽을 보면, 아마 예방교육 자료인 것 같은데, 비합리적 생각으로 '소중한 내 몸을 다른 사람이 봤기 때문에 부끄럽다', 건강한 생각으로 '아니다. 소중한 내 몸을 보여줬지만 마음까지 준 것은 아니다'라는 기재가 있음. 어떤 교육을 마련하는지 보다는 교육 담당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소통하는지가 중요한데, 법원에서 위와 같은 잘못된 내용이 교육되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큰 우려가 됐음
- 위와 같은 우려를 고려하여, 적어도 6개월 이상 이루어진 강의안 및 이에 대한 강의평가 등을 한 번 살펴봤으면 함. 또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처리 과정과 결과, 이행과정을 제공해 주시면 면밀히 보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음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이미경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하신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만든 자료 인 것 같음
- 위원님께서 구체적 사항을 보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간사인 기획총괄심



의관에게 메일을 주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음.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해 속으로는 자부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 정말 한 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해주시면 적어도 위원께는 보여드리고 한 번 진단을 받고 싶음

- 본인 역시 작년 5월 미투운동과 관련된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한 적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포럼 내용 역시 이번 자료에 있어 살펴봤는데 본인 역시 큰 감명을 받았음. 법관의 입장에서는 관련 이론보다도 어떻게 이런 내용을 재판 과정이나 결론에 반영할 지가 더욱 중요할 텐데, 법원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사법정책심의관의 설명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함.
  - 해당 자료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지원관 담당 예정자를 대상으로 관련 상담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강의 도중에 제공한 자료 중 일부로서, 해당 부분은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후유증에 관한 정신건강적 해설을 하시면서 상담 사례를 예시한 것 중 일부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림
  -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법원의 여러 교육 자료가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의장
    - 오승이 위원님께서 주신 4가지 의견에 대한 사법정책심의관의 설명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 오승이 위원
    - 신임법관 임명방식이 경력법관으로 바뀌면서 사법부 내 많은 구성원들이 향후 남성 법관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이번 임용 결과가 그렇게 나면서 우려 섞인 예측이 현실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주변에 많았기 때 문에 질문을 드린 것임



• 궁금한 점은 1차 서류심사가 완전히 블라인드인데 1차 서류심사 결과 성별 간에 차이가 났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와 같이 차이가 난 것이 애초 여성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1차 서류 심사 결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성별이 법관 임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본인 역시 굉장히 궁금함. 처음에 지원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이 많이 지원했지만 심사 결과 여성 비율이 줄어들게 된 것인지, 만약 여성이 많이 지원했지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면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단 155명 중 법관 임용이 확정되면 금년 내로 연구를 해서 법관 임용의 성평등 부분에 대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음
- 육아와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법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일일이 자문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으면 '소통의 창'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항상 관심을 가질 예정 이고, 필요에 따라 답변도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림

#### 13. '법원장 추천제' 안건 회부에 관한 의견

#### 가.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장 추천제는 우리 사법부는 물론 비교법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유럽국가 대부분은 임명의 방식에 의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일부 있긴 하지만 우리와 같은 추천제 형식이 아니라 나이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정 기한까지 법원장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법원장 경험이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법원장은 미국이나 유럽의 법원장과는 달리 법원공무원은 물론 대국민 차원에서 인사나 예산에 관한 권한 이 커서 굉장히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림
  - 본인이 생각한 일정은 세 번의 시범실시 및 경과 분석을 통해 내년 인사 후 향후 시행범위와 시행시기를 정하고 내년 11월 공표하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많은 위 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출범하는 제2기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



2021년 2월 정기인사 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을 첫 번째 안건으로 회부하고자 함

- 원래 본 안건은 제1기 분과위원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 나19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제2기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임. 제2기 분과위원회는 내년 인사를 준비해야 되지만 그 전에 시간이 1개월 정도는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한 후 10월 말 자문회의에 보고할 것을 명 할 예정임
- 윤준 위원님께서 법원장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검토를 제안하셨는데, 본인역시 법원장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음. 보통 고등부장으로 있다가 법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으로서의역할에 대한 연수를 2~3일 받는데, 법원장 추천제의 전면 시행 후에는 비슷한 연수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함. 실은 작년에 대상자가 2명밖에 없어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향후 추천제에 의한 법원장 수가 많아지면 법원장 연수도고려해 보고, 연수 결과가 모이면 법원장을 위한 매뉴얼도 비공개로라도 한 번마련하고자 함
- 위원들은 의장이 제안한 법원장 추천제 관련 안건의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회부 여 부에 대해 전원 동의하였음

#### 나. 결정사항

■ 2021년 2월 정기인사 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에 관한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하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2020년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함

#### 14.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공개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 내지 제8차 회의 개별 자료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 후 의결하였음

#### 15.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8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 할 부분은 없다고 의결함
-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배진호 인사심의관, 강정현 인사담당관, 서현웅 사무관(서기)를 제외한 운영지원단원 퇴장
  - 16. 장기근무제도 연구결과 최종 보고 및 중요사항 논의(소관: 법관인 사 분과위원회)

#### 가. 기초발제

- 서경환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현장 게시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장기근무제도에 대한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연 구 결과에 관하여 보고함
    - ① 2021년 정기인사 시 장기근무제도 시행 대상법원에 관한 검토, ② 신청권의 범위에 관한 검토, ③ 장기근무법관 선정기준에 관한 검토

#### 나. 논의

■ 2021년 정기인사 시 장기근무제도 시행 대상법원, 신청권의 범위, 장기근무 법관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논의

#### 다. 결정사항

-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1년 2월 정기인사 시 전국 43개 법원(서울권, 경인권, 지방권)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근무제도 시행 시 법관책임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함

##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0. 10. 29.(목) 10:30

■ 장소: 미정(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가능)



(끝)